##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



[시행 2017. 2. 28.] [조례 제3382호, 2017. 2. 28., 제정]
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(노인복지과), 063-281-244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비하고,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노인"이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.
- 2. "홀로 사는 노인"이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.
- 3. "고독사"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.
- 4. "고독사 위험자"란 경제적,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.
- 5. "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"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, 안부전화,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.
- 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시장은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추진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(이하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전수조사를 통한 등록·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 - 2.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
  - 3.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
  - 4.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
  - 5.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·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.
  -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, 응급의료기관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- **제6조(지원대상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(이하 "지원대상자"라 한다)로 선정 할 수 있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
- 2. 동 주민센터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
- 3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

제7조(지원사항)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지원대상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
- 2.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한 말벗,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
- 3. 지원대상자가 위독 시 긴급의료비 지원
- 4. 지원대상자 가정에 가스·화재·활동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서비스 제공
- 5.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
- 6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.

**제8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**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